

SAHMYOOK UNIVERSITY

2026학년도

# 재외국인 모집요강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삼육대학교

미션, 비전, 열정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는 삼육대학교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인성교육에 AI·SW 첨단학문을 더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변화의 힘을 키워갑니다.



**2026학년도  
모집 안내**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5. 9. 8.(월) ~ 9. 12.(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5. 12. 29.(월) ~ 12. 31.(수)

입학처 문의: 02-3399-3377~9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si.syu.ac.kr](http://ipsi.sy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인당 장학금  
5년 연속 서울권

1위

2023년 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400만 6695원  
(교육부, 2024년 대학정보공시 /  
재학생 5천명 이상 서울 일반대학 중)



해외취업률  
4년 연속 수도권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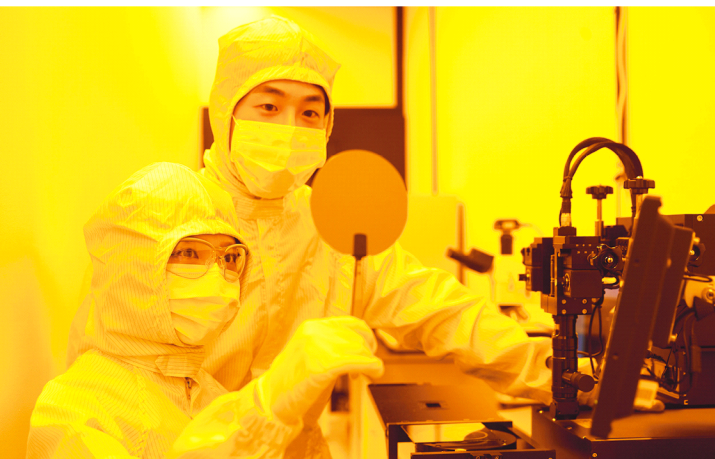
한국장학재단 '파란사다리 사업' 7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연수사업' 8년 연속 선정  
취업자 8년간 153명 배출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중심의 기술융합으로 따뜻한 미래를 그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 6년간 최대 **60**억원 지원



## | SW 기초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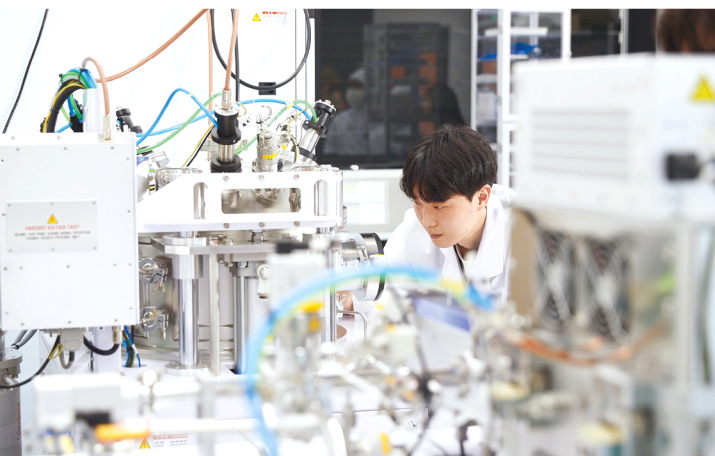
- **입학 전 SW기초교육**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 시대에서 SW가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 본인의 전공과 연관된 SW의 역할에 관한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운영합니다.
- **전교생 SW기초교육**  
졸업을 위한 영역별 교양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을, 교양 필수로 '컴퓨팅 사고력' 과목을 운영합니다.



## | SW 융합교육

삼육대의 건강과학 특성화와 SW를 융합한 교육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SW건강과학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 **SW건강과학 연계전공:** 보건빅데이터, SW중독심리, SW중독재활
- **SW마이크로전공:** 보건빅데이터, 스마트헬스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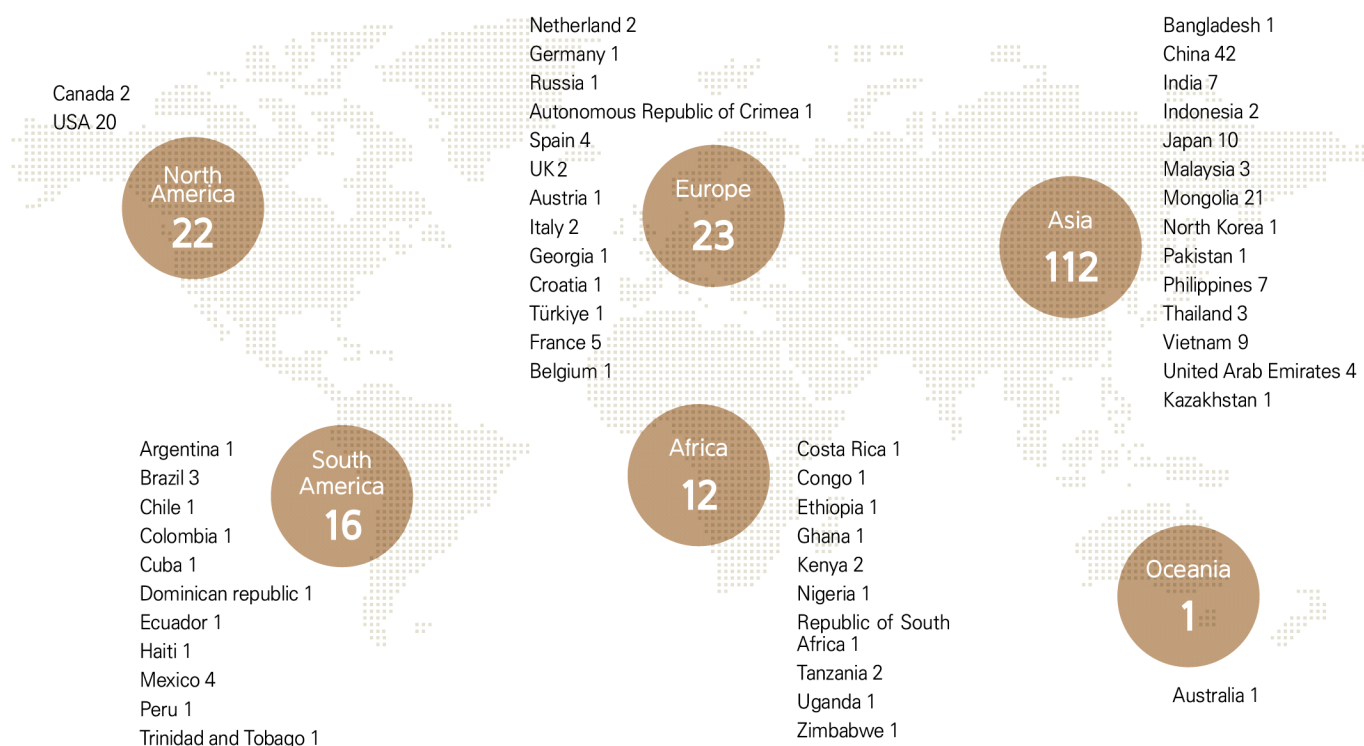
## | SW 전공교육

소프트웨어 전공자 대상으로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며 SW Step-up캠프, SW코딩테스트, SW해커톤대회, 오픈소스 경진대회 및 프로젝트 경진대회 등을 운영합니다.



#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계 속의 삼육인으로 성장합니다

전 세계 **50**개국 **186**개교와 국제교류협정체결



## 교환학생 제도

재학기간 동안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일정 기간(최대 1년) 수학과 본교에서 연간 최대 34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권(11) / 중어권(8) / 일어권(6) / 유럽(15)**

(\*교환학생 파견 대학 목록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성적 우수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입학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1년 단기유학 프로그램입니다. 등록금과 왕복항공료 등 경비를 삼육대와 자매대학이 함께 전액 지원합니다.





## 학습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캠퍼스 '서울 4대 캠퍼스 봄꽃 명소'로 선정 (2023, 서울관광재단)



### 『기숙사 수용률』 서울권 대학 중 4위

- 기숙사 수용률 23.1%
- 4개 생활관에서 총 1352명 수용  
(2024년 대학정보공시, 재학생 5천명 이상 서울지역 대학 중)

### 편리한 교통

- 🚆 8호선 별내역 개통으로 **잠실에서 20분대** 이동 가능
- 🚌 6호선 화랑대역, 8호선 별내역에서 **스쿨버스 운행**



# 2026학년도 재외국민모집 안내

## | 목 차 |

### I. 기본사항 안내

|                   |   |
|-------------------|---|
| •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 6 |
| • 전형일정            | 7 |
| • 지원자 원서접수 및 유의사항 | 8 |

### II. 세부 전형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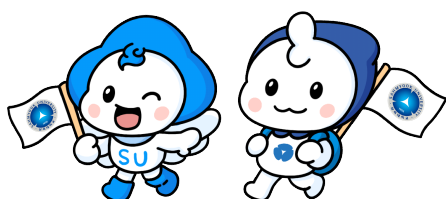
|                           |    |
|---------------------------|----|
| <b>입학정원 2%이내 전형</b>       |    |
| • 영주교포 자녀                 | 10 |
| • 국외 근무 공무원의 자녀           | 11 |
| • 국외 상사직원(파견근무자)의 자녀      | 12 |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13 |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14 |
| •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 15 |
| • 자영업자의 자녀                | 16 |
| • 선교사의 자녀                 | 17 |
| <b>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전형</b> |    |
|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18 |
| • 북한이탈주민                  | 19 |

### III. 전형방법

|        |    |
|--------|----|
| • 전형방법 | 20 |
|--------|----|

### IV. 공통사항 안내

|                   |    |
|-------------------|----|
| • 자격기준            | 21 |
| • 서류제출 안내         | 25 |
| • 전형료             | 28 |
| • 재외 한국학교 안내      | 29 |
| • 지원자 유의사항        | 30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31 |
| • 학사제도 안내         | 33 |
| • 기타 안내           | 35 |







##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 단과대학   | 모집단위       | 입학정원  | 모집인원   |                                                         |
|--------|------------|-------|--------|---------------------------------------------------------|
|        |            |       |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
| 신학대학   | 신학과        | 38    | 3명 이내  | * 적정인원<br>(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약학과,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제외) |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69    | 6명 이내  |                                                         |
| 약학대학   | 약학과        | 30    | -      |                                                         |
| 창의융합대학 |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 90    | -      |                                                         |
|        | 영어영문학과     | 41    | 4명 이내  |                                                         |
|        | 항공관광외국어학부  | 33    | 3명 이내  |                                                         |
|        | 글로벌한국학과    | 20    | 2명 이내  |                                                         |
|        | 경영학과       | 42    | 4명 이내  |                                                         |
|        | 유아교육과      | 35    | -      |                                                         |
|        | 사회복지학과     | 23    | 2명 이내  |                                                         |
|        | 상담심리학과     | 28    | 2명 이내  |                                                         |
|        | 음악학과       | 36    | 3명 이내  |                                                         |
|        | 아트앤디자인학과   | 70    | 7명 이내  |                                                         |
|        | 체육학과       | 36    | 3명 이내  |                                                         |
| 미래융합대학 |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 148   | -      |                                                         |
|        | 물리치료학과     | 40    | 4명 이내  |                                                         |
|        | 보건관리학과     | 21    | 2명 이내  |                                                         |
|        | 식품영양학과     | 33    | 3명 이내  |                                                         |
|        | 컴퓨터공학부     | 45    | 4명 이내  |                                                         |
|        | 인공지능융합학부   | 70    | 7명 이내  |                                                         |
|        | 바이오융합공학과   | 21    | 2명 이내  |                                                         |
|        | 화학생명과학과    | 51    | 5명 이내  |                                                         |
|        | 동물자원과학과    | 21    | 2명 이내  |                                                         |
|        | 환경디자인원예학과  | 47    | 4명 이내  |                                                         |
|        |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 30    | 3명 이내  |                                                         |
|        | 건축학과(5년제)  | 39    | 3명 이내  |                                                         |
| 합계     |            | 1,157 | 23명 이내 |                                                         |

※ 모집단위 및 정원은 교육부 및 대학의 대학학생정원 조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외국민 전형: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약학과, 유아교육과,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미모집)

※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5년) 획득

※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교육인증 획득





##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원서접수 기간          | 2025. 7. 7.(월) 10:00 ~ 7. 11.(금) 1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없음)</li> </ul>                                                                |
| 목회자추천서(신학과) 입력기간 | 2025. 7. 7.(월) 10:00 ~ 7. 14.(월) 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입력</li> <li>추천 목회자가 온라인으로 입력 후 저장 및 제출(별도제출 없음)</li> <li>저장 및 제출 후 수험생 확인 필수</li> </ul> |
| 서류제출 기간          | 2025. 7. 7.(월) 10:00 ~ 7. 14.(월) 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우편 제출</li> <li>※ 우체국 7. 14.(월) 날짜 도장까지 인정</li> </ul>                                      |
| 합격자 발표           | 2025. 8. 13.(수) 14:00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 href="http://ipsi.syu.ac.kr">http://ipsi.syu.ac.kr</a>)</li> </ul>         |
| 합격자 예치금 납부       | 2025. 12. 15.(월) 10:00 ~ 12. 17.(수) 1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안내</li> </ul>                                                                            |
| 최종등록금 납부         | 2026. 2. 3.(화) 10:00 ~ 2. 5.(목) 1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안내</li> </ul>                                                                            |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 원서접수 및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 모집유형 | 접수기간                                   | 온라인접수                                                                                                                                                                                                         |
|------|----------------------------------------|---------------------------------------------------------------------------------------------------------------------------------------------------------------------------------------------------------------|
| 재외국민 | 2025. 7. 7.(월) 10:00 ~ 7. 11.(금) 1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 href="http://ipsi.syu.ac.kr">http://ipsi.syu.ac.kr</a>)</li> <li>· 진학어플라이 (<a href="http://www.jinhakapply.com">www.jinhakapply.com</a>)</li> </ul> |

### 원서접수 절차 안내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yu.ac.kr>) ☞



#### 대학 표준공통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회원가입 ☞



#### “삼육대학교” 선택



####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확인

☞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 원서작성 [목회자추천서(해당자만) 입력]



#### 전형료 결제

☞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음 ☞



#### 수험표 출력



#### 제출서류 확인 및 발송(해당자)

☞ 제출 서류봉투 표지 출력 후 해당란(□)에 ‘✓’ 표시해 발송해야 함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완료하여 원서접수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모든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지원자 동의서’ 내용에 동의해야 원서접수가 진행됩니다.**

#### ■ 지원자 동의서 내용

1. 나는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설립된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과정 및 채플 등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 나는 건강생활 원리에 따라 음주, 흡연, 마약 등 인체유해물질과 관련하여 규정한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기관 및 문의처:**

(주)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 1544-7715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실시하며, 원서접수 중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문의 진행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모집단위는 제1지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원서접수는 전형료 결제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학과 및 전형 변경, 지원 포기 등은 불가능하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형 유형, 지원학과/전공, 지원자격 등을 정확히 입력한 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주소와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동안 사용되므로 변경될 경우 즉시 본교 입학처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명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이름이 상이할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 지원자와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 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는 지원자가 즉시 입학처(02-3399-3377)로 통보해야 합니다.
7.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서류제출은 지정된 날짜까지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발송 또는 방문 제출)

### 선발 관련 사항

1.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지원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2026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26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취소 됩니다.  
※ 단,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4. 반영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으로 처리합니다.
5. 입학전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재학 중이라도 서류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위조,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합격)이 취소됩니다.
6. 입학전형 부정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7.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외국민(2% 이내) 전형

### 영주교포 자녀

#### 지원자격 (자격사항 모두 해당자)

- \*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 \* 자격인정 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계속 보유한 자
- \* 영주권 취득 및 국내의 주민등록은 이민말소가 되어야 함
- \*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 학생 |    |                   | 보호자 |    |                   | 배우자 |                   | 비고                           |
|----|----|-------------------|-----|----|-------------------|-----|-------------------|------------------------------|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74일 이상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br>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함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10.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2. 주민등록 이민말소 확인서류(학생)
13.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4.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5.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16.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중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국외 근무 공무원의 자녀

### 지원자격 (자격사항 모두 해당자)

- \*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 ※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 학생 |    |                   | 보호자 |    |                   | 배우자 |                   | 비고                           |
|----|----|-------------------|-----|----|-------------------|-----|-------------------|------------------------------|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74일 이상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br>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함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12.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3.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14.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재외국민(2% 이내) 전형

### 국외 상사직원(파견근무자)의 자녀

#### 지원자격 (자격사항 모두 해당자)

- \*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국외 상사직원(파견근무자)의 자녀
- \*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 학생 |    |                   | 보호자 |    |                   | 배우자 |                   | 비고                           |
|----|----|-------------------|-----|----|-------------------|-----|-------------------|------------------------------|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74일 이상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br>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함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12.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3. 국외지사 설치인증서 사본 또는 국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사본(원본대조 확인본)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15.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지원자격 (자격사항 모두 해당자)

- \*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 \*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 학생 |    |                   | 보호자 |    |                   | 배우자 |                   | 비고                           |
|----|----|-------------------|-----|----|-------------------|-----|-------------------|------------------------------|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74일 이상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br>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함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12.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3. 국외지사 설치인증서 사본 또는 국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사본(원본대조 확인본)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15.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재외국민(2% 이내) 전형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지원자격 (자격사항 모두 해당자)

- \*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 학생 |    |                   | 보호자 |    |                   | 배우자 |                   | 비고                           |
|----|----|-------------------|-----|----|-------------------|-----|-------------------|------------------------------|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74일 이상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br>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함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12.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13.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15.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 지원자격 (자격사항 모두 해당자)

- \*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 \*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 학생 |    |                   | 보호자 |    |                   | 배우자 |                   | 비고                           |
|----|----|-------------------|-----|----|-------------------|-----|-------------------|------------------------------|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74일 이상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br>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 제출서류

-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함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 여권 사본(부, 모,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등록일이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현지법인 대표일 경우 '법인등록증'에는 대표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폐업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체류국 발급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증명서
    -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취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제출
    - ※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납부 증빙자료 제출
    - ※ 세금납부 증빙서류에는 해당자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가 없거나 면세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정부 기관의 서류 등) 반드시 제출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재외국민(2% 이내) 전형

### 자영업자의 자녀

**지원자격**  
(자격사항 모두 해당자)

- \*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 \*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자영업자의 자녀
- \*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최소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 학생 |    |                | 보호자 |    |                | 배우자 |                | 비고                        |
|----|----|----------------|-----|----|----------------|-----|----------------|---------------------------|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
| 3년 | 3년 | 각 1년마다 274일 이상 | 3년  | 3년 | 각 1년마다 244일 이상 | 3년  | 각 1년마다 244일 이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같음하여 인정함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 등록일은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보호자의 이름이 대표 또는 공동투자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12. 체류국 발급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납부 증빙자료 제출
  - ※ 세금납부 증빙서류에는 해당자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가 없거나 면세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정부 기관의 서류 등) 반드시 제출
13. 제3국 수속인정서(해당자)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15.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헌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선교사의 자녀

### 지원자격 (자격사항 모두 해당자)

- \*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 \*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국외로 파견되어 3년 이상 선교활동한 선교사의 자녀
- \*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 학생 |    |                   | 보호자 |    |                   | 배우자 |                   | 비고                           |
|----|----|-------------------|-----|----|-------------------|-----|-------------------|------------------------------|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74일 이상 | 3년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3년  | 각 1년마다<br>244일 이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br>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 제출서류

-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함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 여권 사본(부, 모,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 해당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등록증 사본(해당 종교단체 원본대조필 확인)
  - 해당 종교단체장이 발급한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선교국 및 파견기간 명시)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전형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지원자격

- \*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7.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학생)
  8.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학생)
  9. 여권사본(학생)
  10.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신학과는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발행)
5.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6.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7.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 목록표 온라인으로 작성)  
-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원본 제출

- ※ 모든 국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시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  
(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제출



## 전형방법

### 전형방법

| 모집단위    | 전형구분                       | 서류평가         |
|---------|----------------------------|--------------|
| 전 학과(부) | 재외국민<br>(2% 이내)            | 100%(1,000점) |
|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br>북한이탈주민 | 100%(1,000점) |

### 선발방법

| 전형구분                       | 선발방법                                                                                                                                              |
|----------------------------|---------------------------------------------------------------------------------------------------------------------------------------------------|
| 재외국민<br>(2%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원자를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만큼 선발</li> <li>·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li> </ul> |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br>북한이탈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모집단위별로 교육여건이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점 성적순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적정인원 선발</li> <li>·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li> </ul>  |

### 서류평가

#### \* 평가방법

-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항목별(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정성적 종합평가
- 서류평가는 지원자 이름, 수험번호, 출신학교, 부모 정보 등의 항목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진행
- 평가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 \* 서류평가 항목

| 평가항목  | 반영비율 |
|-------|------|
| 학업역량  | 30%  |
| 진로역량  | 50%  |
| 공동체역량 | 20%  |



## 자격기준

### 국외파견 근무자 범위

| 구분                    | 근무자 자격기준                                                                                                                                                                                                                                                                 |
|-----------------------|--------------------------------------------------------------------------------------------------------------------------------------------------------------------------------------------------------------------------------------------------------------------------|
| 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 국외근무<br>상사직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br>· 외국환관리법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사(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br>·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br>-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br>·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br>·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등 |
| 외국정부 및<br>국제기구의<br>범위 |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br>(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 제외)<br>·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br>(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 연수(어학연수 포함),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 제외)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인정기준

| 구분   | 기간 인정기준                                                                                                                                                                                                                                                                                                                                                          |
|------|------------------------------------------------------------------------------------------------------------------------------------------------------------------------------------------------------------------------------------------------------------------------------------------------------------------------------------------------------------------|
| 공통   | · 국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에 기재된 기간<br>· 국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국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 근무기간 | · 증명서(재학 및 경력증명서) 상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입발령일까지의 기간                                                                                                                                                                                                                                                                                                                       |
| 체류기간 |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br>-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br>-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 자격기준

### 외국학교 인정기준

| 구분 | 외국학교 인정기준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해 있는 학교여야 함</li> <li>·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li> <li>·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 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수학인정서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li> </ul> </li> <li>·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연한은 인정하지 않음</li> </ul> |

###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

| 구분                                                                               | 재학기간 인정기준                                                                                                                                                                                                                                                                                                                                                                                                                                       |
|----------------------------------------------------------------------------------|-------------------------------------------------------------------------------------------------------------------------------------------------------------------------------------------------------------------------------------------------------------------------------------------------------------------------------------------------------------------------------------------------------------------------------------------------|
| 재외국민<br>(영주교포,<br>국외근무자,<br>유치과학자,<br>교수요원,<br>국외선교사,<br>자영업자,<br>현지법인근무자)<br>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에 3년 이상 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li> <li>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li> <li>-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 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li> </ul> </li> </ul> |
| 북한이탈주민                                                                           | ·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무관함                                                                                                                                                                                                                                                                                                                                                                                                                                |

※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 조기졸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전·편입 과정이 아닌 재학기간 해당교의 정식 학칙에 의하여 조기졸업(예정)한 자 또는 외국과의 학제 차이로 총 재학 년수가 11년 6개월(1개 학기 범위 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외국 교육과정 인정기준

-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초·중등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초·중등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 1개 국가의 초·중등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학년제     |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 비고                                                              |
|---------|--------------------------------------------------------------------------------------|-----------------------------------------------------------------|
| 10학년 이하 | 미인정                                                                                  |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 11학년제   | ·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br>-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
| 12학년제   |                                                                                      |                                                                 |
| 13학년 이상 |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 부족한 학년 교육과정: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자격기준 기타사항

- \*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6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함
- \* 입학허용기간(고교졸업 후 경과기간) 제한이 없음
-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재학기간은 외국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함
-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 차이,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 그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 신학과 추가 제출서류
    - 목회자추천서(추천 목회자가 직접 온라인 입력) 1부
    -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1부



## 자격기준

### ■ 이수학기 인정 관련 주요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 주요 사례                     | 학년<br>학기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인정여부                                     |
|---------------------------|----------|---|---|---|---|---|---|----|---|---|---|---|---|---|---|----|---|----|---|----|---|----|---|----|---|------------------------------------------|
|                           |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
| 학제 차이로 인한<br>1개 학기 누락     | 재학<br>기간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   |    |   |    |   |    |   |    |   | 23학기 이수<br>인정                            |
|                           |          |   |   |   |   |   |   |    |   |   |   |   |   |   |   | 누락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 학제 차이로 인한<br>학기 누락과 중복    | 재학<br>기간 | D | D | D | D |   |   |    |   | D | D | D | D | D |   |    |   |    |   | D  | D | D  |   |    |   | 23학기 이수<br>인정                            |
|                           |          |   |   | A | A | A | A | 누락 |   |   |   |   |   | A | A | A  | A | 누락 |   |    |   | 누락 | A | A  | A |                                          |
| 국내외 외국학교 간<br>1개 학기 이상 중복 | 재학<br>기간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   |    |   |    |   | 중복학기 중 1학기만<br>외국학교 이수 인정<br>→ 국외 6학기 인정 |
|                           |          |   |   |   |   |   |   |    |   |   |   |   |   |   |   |    |   | A  | A | A  | A | A  | A | A  | A |                                          |
|                           | 재학<br>기간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D |    |   |    |   | 외국학교 5학기 이수<br>→ 지원자격 미달                 |
|                           |          |   |   |   |   |   |   |    |   |   |   |   |   |   |   |    |   |    |   | A  | A | A  | A | A  | A |                                          |
| 국내초교 입학 후<br>국외초교 입학      | 재학<br>기간 | D |   |   |   |   |   |    |   | D |   |   |   |   |   |    |   |    |   |    |   |    |   |    |   | 전(全)교육<br>인정                             |
|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 국내초교 입학 후<br>국외초교 전학      | 재학<br>기간 | D |   |   |   |   |   |    |   |   |   |   |   |   |   |    |   |    |   |    |   |    |   |    |   | 전(全)교육<br>미인정                            |
|                           |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학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서류제출 안내

### ■ 지원자격 서류 목록

| 순번 | 서류명                                  | 영주교포 | 국외근무<br>공무원 | 국외<br>상사직원 | 외국정부/<br>국제기구<br>근무자 | 유치과학자<br>및 교수요원 | 비고                               |
|----|--------------------------------------|------|-------------|------------|----------------------|-----------------|----------------------------------|
| 1  | 지원자 종합기록표                            | ○    | ○           | ○          | ○                    | ○               | · 양식 작성 후 제출                     |
| 2  | 초등학교 재학/성적, 졸업증명서                    | ○    | ○           | ○          | ○                    | ○               |                                  |
| 3  | 중학교 재학/성적, 졸업증명서                     | ○    | ○           | ○          | ○                    | ○               |                                  |
| 4  | 고등학교 재학/성적,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                                  |
| 5  | 학사일정(School Calendar)<br>또는 학제 관련 서류 | ○    | ○           | ○          | ○                    | ○               |                                  |
| 6  | 국외 학교 학력조회동의서                        | ○    | ○           | ○          | ○                    | ○               | · 양식 작성 후 제출                     |
| 7  |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 학생 기준                          |
| 8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 ○                    | ○               | · 학생, 부, 모                       |
| 9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 ○    | ○           | ○          | ○                    | ○               | · 학생, 부, 모                       |
| 10 | 여권 사본                                | ○    | ○           | ○          | ○                    | ○               | · 학생, 부, 모                       |
| 11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    | ○           | ○          | ○                    | ○               | · 학생, 부, 모                       |
| 12 | 근무자 재직증명서                            | ○    | ○           | ○          | ○                    | ○               | · 해외근무기간 명시                      |
| 13 |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 해당자  |             |            |                      |                 |                                  |
| 14 |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                                  |
| 15 | 영주권 사본                               | ○    |             |            |                      |                 | · 학생, 부, 모                       |
| 16 | 주민등록 이민말소 확인서                        | ○    |             |            |                      |                 | · 학생                             |
| 17 | 공무원 증명 서류                            |      | ○           |            |                      |                 |                                  |
| 18 | 국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br>국외지점(사무소) 설치신고서 사본   |      |             | ○          |                      |                 | · 신고(허가)일이 보호자의<br>근무시작일 이전이어야 함 |
| 19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 사실 증빙서류                 |      |             |            | ○                    |                 |                                  |
| 20 |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      |             |            |                      | ○               |                                  |
| 21 | 재외국민 특별전형<br>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 해당자  |             |            |                      |                 | ·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 ※ 초·중·고등학교 재학/성적,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함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전출일자 포함) 기재(재학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및 최종 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 제출

#### ※ 학사일정(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해당 외국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 ※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 부모 이혼 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 공무원 증명 서류

- 재외 한국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문이나 인사기록카드 등)



## 서류제출 안내

| 순번 | 서류명                                  | 현지법인<br>근무(취업)자 | 자영업자 | 선교사 | 전교육과정<br>해외이수자 | 북한이탈<br>주민 | 비고                                         |
|----|--------------------------------------|-----------------|------|-----|----------------|------------|--------------------------------------------|
| 1  | 지원자 종합기록표                            | ○               | ○    | ○   | ○              | ○          | · 양식 작성 후 제출                               |
| 2  | 초등학교 재학/성적, 졸업증명서                    | ○               | ○    | ○   | ○              | 해당자        |                                            |
| 3  | 중학교 재학/성적, 졸업증명서                     | ○               | ○    | ○   | ○              |            |                                            |
| 4  | 고등학교 재학/성적,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
| 5  | 학사일정(School Calendar)<br>또는 학제 관련 서류 | ○               | ○    | ○   | ○              |            |                                            |
| 6  | 국외 학교 학력조회동의서                        | ○               | ○    | ○   | ○              |            | · 양식 작성 후 제출                               |
| 7  |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학생 기준                                    |
| 8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 ○<br>(학생)      |            | · 학생, 부, 모                                 |
| 9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 ○               | ○    | ○   | ○<br>(학생)      |            | · 학생, 부, 모                                 |
| 10 | 여권 사본                                | ○               | ○    | ○   | ○<br>(학생)      |            | · 학생, 부, 모                                 |
| 11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               | ○    | ○   |                |            | · 학생, 부, 모                                 |
| 12 | 근무자 재직증명서                            | ○               | ○    | ○   |                |            | · 해외근무기간 명시                                |
| 13 |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 해당자             |      |     | 해당없음           |            |                                            |
| 14 |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                                            |
| 15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br>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16 | 해외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               | ○    |     |                |            | · 학생의 재외국민 자격기간 이상의 서류                     |
| 17 |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      | ○   |                |            | · 고유번호증 불가<br>· 종교단체 원본대조필                 |
| 18 |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                         |                 |      | ○   |                |            | · 종교단체 명의 발급,<br>법인 대표자 날인<br>· 국가 및 기간 명시 |
| 19 | 외국국적증명서                              |                 |      |     | 해당자            |            |                                            |
| 20 |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                |            |                                            |
| 21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     |                | ○          |                                            |
| 22 |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또는<br>학력인정증명서           |                 |      |     |                | 해당자        |                                            |
| 23 |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br>합격증명서           |                 |      |     |                |            |                                            |
| 24 | 재외국민 특별전형<br>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 해당자             |      |     |                |            | ·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 초·중·고등학교 재학/성적,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함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전출일자 포함) 기재(재학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및 최종 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 제출

※ 학사일정(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해당 외국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 부모 이혼 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서류제출 유의사항

- \*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통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 발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은 원본 인정
  - ※ 부득이하게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합격자는 입학전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3기관에 의한 원본대조필 날인서류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서류발급시점이 지원 자격과 관련 있는 경우(예: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재직 회사의 재직증명서 등) 원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최종합격자는 국외에서 재학한 학교의 최종 재학 관련 서류(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증명서)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입학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구분         | 인정 확인서 (택1) | 발급기관               |
|------------|-------------|--------------------|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확인서    | 해당 학교 소재국 정부 지정기관  |
|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해당 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영사관 |
|            | 영사확인서       |                    |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해당 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영사관 |
|            | 영사확인서       |                    |

-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의 재학관련서류[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 불필요
-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관련 문의: 외교부 관련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아포스티유 확인전용 상담전화: 02-2100-7600 / 영사콜센터: 02-3210-0404
- \* 최종합격자 중 국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입학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 최종합격자 중 원서접수 시점에서 지원 자격 부여연한을 미충족하여 지원 자격 인정기준 시점까지 추가로 보호자 근무기간 및 부·모·본인 체류일수를 계수하여야 하는 경우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해당국 세금납부증명서(현지법인 근무자 및 자영업자 자녀), 부·모·본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입학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 서류상 이름(영문 포함)이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판장 발행의 동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 서류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전형료 환불은 불가함
- \*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

원서접수 → 마이페이지 → 출력물 → '[출력]제출서류 봉투표지'에서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한 후 해당란(□)에 '✓' 표시하고 발송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서류도착 확인' 메뉴에서 서류제출 확인 가능 >

- ※ 등기우편 제출처: (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백주년기념관 107호 입학처



## 전형료

### 전형료

| 전형             | 전형료      | 비고                                  |
|----------------|----------|-------------------------------------|
| 재외국민(2% 이내)    | 150,000원 | · 온라인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br>(전형료에 포함) |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100,000원 |                                     |
| 북한이탈주민         | 50,000원  |                                     |

※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전형료 환불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원서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 단순변심 등 기타 개인사정은 환불 불가

- 단,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환불방법: 수험생이 입학원서 작성 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환불

| 전형료 환불 신청기간                       | 환불 금액                                                 |
|-----------------------------------|-------------------------------------------------------|
| 원서접수 마감 전                         | · 온라인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                            |
| 원서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50%                              |
| 원서접수 마감 8일 이후부터<br>전형별 고사일 2일 전까지 | · 원서 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30%<br>(전형별 고사가 없는 전형은 환불하지 않음) |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6년 4월 30일(목)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반환대상자가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재외 한국학교 안내

(2025년 3월 기준)

| 국가명     | 학교명                                                                                                                         |
|---------|-----------------------------------------------------------------------------------------------------------------------------|
| 일본      | 건국한국학교, 교토국제중고등학교, 동경한국학교,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중고등학교                                                                                 |
| 중국      | 광저우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소주한국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
| 대만      | 까오슝한국국제학교, 타이베이한국학교                                                                                                         |
| 베트남     |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한국학교, 젯다한국학교                                                                                                             |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 싱가포르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 태국      | 방콕한국국제학교                                                                                                                    |
| 필리핀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 파라과이    | 파라과이한국학교                                                                                                                    |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 러시아     | 모스크바한국국제학교                                                                                                                  |
| 이란      | 테헤란한국학교                                                                                                                     |
| 이집트     | 카이로한국학교                                                                                                                     |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
| 캄보디아    | 프놈펜한국국제학교                                                                                                                   |



## 지원자 유의사항

### 복수지원 허용범위

- \*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대학 간 복수지원 가능(최대 6회)
-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1개의 대학에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 전형 각각을 지원 1회로 산정  
※ 전형: 정원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
- \* 본교 수시모집 복수지원 범위 예시
  - 세움인재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의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최대 6회에 포함)
  - 기회균형 II 전형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의 정원외 전형 간 복수지원 불가
  - 동일 전형내 모집단위(학과) 간(간호학과와 경영학과 등) 복수지원 불가

### 복수지원 금지사항

-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 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됨. 그리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대학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
-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 당해연도 모든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됨

###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 \* 입학전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재학 중에라도 서류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합격)이 취소됨
-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 입학전형 부정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개인정보 취급 기본사항

- \* 본교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 본교 원서접수를 통하여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본교에서 입학전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본교 합격 이후부터는 교육, 연구·행정, 대학생활 및 학사정보 안내의 목적으로 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 개인정보의 종류: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형구분, 계열구분, 지원학과(부), 졸업일자, 수험번호, 주야구분, 계열구분, 입시년도, 출신학교(최종학력구분, 재학·졸업학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추가연락처 및 관계, 환불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 개인정보 취급 및 위탁 안내

- \*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탁업체      | 위탁업무 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기타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 고등교육법 시행                         |
|           | · 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 색 및 통보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 주민등록번호/모집단 위명: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
| (주)진학어플라이 | · 대입 원서접수 대행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

###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 \* 본교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 본교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                                                                                                                                                                                                |
|------|------------------------------------------------------------------------------------------------------------------------------------------------------------------------------------------------|
| 적용대상 | · 2017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대상교 출신자 (교육과정 등의 이유로 일부 학교 제외) 학교생활기록부<br>※ 온라인 제공 대상교는 온라인 원서접수 시 확인가능                                                                            |
| 제공항목 |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인적 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실적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br>※ '인적사항'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3개 세부항목만 제공 |

-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미설치교 포함) 출신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검정고시 대입전형 자료 제공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3자 개인정보 동의

- 본교에서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발급기관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원서접수 시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함
-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내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당 시·도교육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합격자에 대한 조회 서비스 제공
  -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지원자 성명, 본교 지원 모집단위, 주민등록번호, 합격지구, 합격일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해당 업무 목적 종료 시점까지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http://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http://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 검정고시 대학입학전형자료는 5년간의 대상기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 수시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2회차 합격자의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지원자 출신고교 합격여부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 지원자의 출신고교에서 합격여부 조회 요청 시 정보제공을 위해 원서접수 시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지원자 출신고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해당 고교출신 합격자에 대한 조회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본교 지원 모집단위, 본교 지원 전형,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해당 업무 목적 종료 시점까지
- ※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시 합격자 조회는 해당고교에 지원하지 않음





## 학사제도 안내

### 학과 간 전과

- \* 학년과 관계없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 희망 학과(부)의 모집정원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할 수 있음(단,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계열 학과 전과 불가)
- 신학과는 학과의 면접을 거쳐 전과할 수 있음
- 건축학과(5년제)는 건축학인증에서 요구하는 SPC이수와 관련하여 학과의 면접을 거쳐 전과할 수 있음
- 실기가 필요한 예능학과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통해 전과를 허용할 수 있음

### 교직과정 안내

- \* 교직이수 신청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실시하며, 2학년 1학기말에 성적, 인성, 교직, 적성 등을 종합하여 이수자를 선발함

| 계열   | 학과        | 교원자격증 종류    |
|------|-----------|-------------|
| 사범계  | 유아교육과     | 유치원정교사(2급)  |
| 비사범계 | 신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      | 영어영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      | 상담심리학과    | 전문상담교사(2급)  |
|      | 식품영양학과    | 영양교사(2급)    |
|      | 간호학과      | 보건교사(2급)    |
|      | 환경디자인원예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      | 음악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 교직과정 이수는 대학의 학사제도 변경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다전공 안내

### \* 다전공 제도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마이크로전공 등 주전공 이외 타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 구분       | 정의                                                   |
|----------|------------------------------------------------------|
| 복수전공     | · 주전공 외 다른 모집단위의 전공을 전부 이수하여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 부전공      | · 주전공 외 다른 모집단위의 전공을 일부 학점만 이수하여 부전공 인정을 받는 제도       |
| 연계전공     | · 2개 이상의 전공을 연계해 만든 융합형 전공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 마이크로전공   | · 관심 있는 타 전공을 최소 학점 이수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규모 전공 트랙         |
| 자기주도설계전공 | · 학생이 여러 전공을 융합해 자신만의 교육과정과 로드맵을 직접 설계하여 이수하는 맞춤형 전공 |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제외

- 신청자격 및 이수학점

| 구분       | 신청자격   |        | 이수학점    |
|----------|--------|--------|---------|
|          | 이수학기   | 평균평점   |         |
| 복수전공     | 4학기 이상 | 2.5 이상 | 36학점 이상 |
| 부전공      | 1학기 이상 | 2.5 이상 | 21학점 이상 |
| 연계전공     | 2학기 이상 | 2.5 이상 | 36학점 이상 |
| 마이크로전공   | 1학기 이상 | -      | 12학점 이상 |
| 자기주도설계전공 | 2학기 이상 | 2.0 이상 | 36학점 이상 |

※ 기본 이수학점 기준으로, 학과/학번별 전공 이수학점이 상이할 수 있음

### \* 연계전공 과정

- 공연예술콘텐츠, 미디어콘텐츠, 외식산업경영, 운동재활, 정원디자인, 휴먼 ICT, 한류콘텐츠, SW 중독심리, SW중독재활, 보건빅데이터

### \* 마이크로전공 과정

- AI·빅데이터분석, 건강영양, 그린디자인, 글로벌리더십, 금연상담, 기능성화장품, 데이터사이언스, 바이오식품,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백엔드SW개발, 보건빅데이터, 사회복지기초, 스마트팜, 스마트헬스케어, 시각미디어디자인, 싱어송라이팅, 외국인을위한한국어과정, 크리에이티브컨버전스, 항공서비스



## 기타 안내

### 생활교육원(기숙사) 안내

\* 기숙사 입사자격

- 본교 교육이념을 수용하고 생활교육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선발방법

- 지원자 중 서류전형과 거리(원거리우선), 사회적 배려자, 면접을 통해 선발

\* 수용가능인원

| 구분 | 수용가능인원(명) | 비고                    |
|----|-----------|-----------------------|
| 남자 | 687       | · 시온관 460명, 살렘관 227명  |
| 여자 | 665       | · 에덴관 438명, 브니엘관 227명 |
| 계  | 1,352     |                       |

※ 식당동, 장애인실, 휴게실, 체력관리실, 심화학습실, 세탁실, 상담실, 회의실 등 설치

\* 입사비용(한 학기, 식비 별도)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 구분  | 입사비        | 비고                                        |
|-----|------------|-------------------------------------------|
| 4인실 | 815,000원   | · 관리비, 자치회비(10,000원),<br>입사비(100,000원) 포함 |
| 3인실 | 975,000원   |                                           |
| 2인실 | 1,378,000원 |                                           |

\* 기타 입사문의

- 이메일: house@syu.ac.kr
- 전화문의: 평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시온관(남) 02-3399-3667 / 살렘관(남) 02-3399-3662 / 신학숙 02-3399-3667  
에덴관(여) 02-3399-3668 / 브니엘관(여) 02-3399-3679

### 등록금(신입생)

(2025학년도 기준)

| 모집단위                                                                         | 등록금        |
|------------------------------------------------------------------------------|------------|
| 신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유아교육과, 글로벌한국학과,<br>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              | 3,742,000원 |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생명과학과,<br>동물자원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 4,300,000원 |
| 건축학과(5년제), 바이오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융합학부,<br>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 4,530,000원 |
| 음악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                                                               | 4,827,000원 |
| 체육학과                                                                         | 4,455,000원 |
| 약학과                                                                          | 5,253,000원 |

※ 2026학년도 등록금(신입생)은 물가인상 및 교육환경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안내

### 학과 및 행정부서 전화번호 안내

|                |              |            |              |
|----------------|--------------|------------|--------------|
| 간호학과           | 02-3399-1593 | 신학과        | 02-3399-1513 |
| 건축학과           | 02-3399-1856 | 아트앤디자인학과   | 02-3399-1835 |
| 경영학과           | 02-3399-1566 | 약학과        | 02-3399-1616 |
| 글로벌한국학과        | 02-3399-1663 | 영어영문학과     | 02-3399-1533 |
| 동물자원과학과        | 02-3399-1761 | 유아교육과      | 02-3399-1576 |
|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 02-3399-1790 | 음악학과       | 02-3399-1818 |
| 물리치료학과         | 02-3399-1638 | 인공지능융합학부   | 02-3399-1804 |
|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 02-3399-3086 |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 02-3399-3086 |
| 바이오융합공학과       | 02-3399-1951 | 체육학과       | 02-3399-1691 |
| 보건관리학과         | 02-3399-1673 | 컴퓨터공학부     | 02-3399-1790 |
| 사회복지학과         | 02-3399-1671 | 항공관광외국어학부  | 02-3399-1546 |
| 상담심리학과         | 02-3399-1679 | 화학생명과학과    | 02-3399-1710 |
| 식품영양학과         | 02-3399-1654 | 환경디자인원예학과  | 02-3399-1742 |
| 학생처 (장학금)      | 02-3399-3225 | 장애학생지원센터   | 02-3399-3238 |
| 학생처 (국장/학자금대출) | 02-3399-3226 | 취업진로지원센터   | 02-3399-3232 |
| 학사지원팀 (학사안내)   | 02-3399-3153 | 리더십센터      | 02-3399-3075 |
| 재무처 (등록금)      | 02-3399-3443 | 교육혁신원      | 02-3399-3082 |
| 교목처 (채플)       | 02-3399-3333 | 사회봉사단      | 02-3399-3260 |

※ 삼육대학교 입학처 ☎ 02-3399-3377~3379





자유전공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체험하고 찾아가는 나의 전공 삼육대학교 자유전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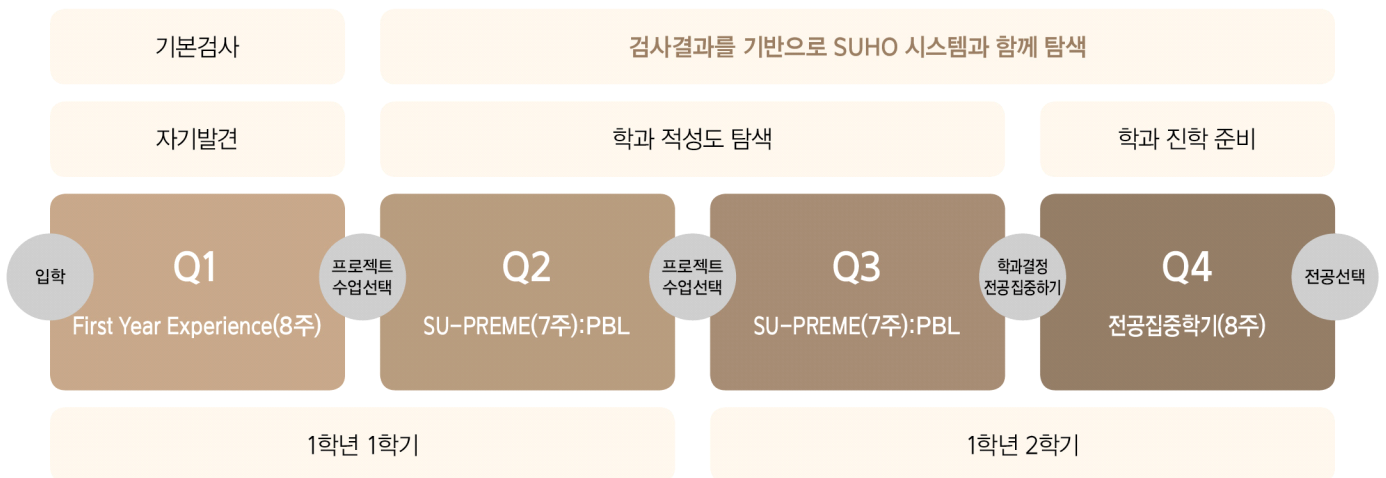
## 자유로운 전공 선택

1년 동안 폭넓은 전공 탐구와 진로 모색의 기회를 가진 후, 1학년 2학기 종료 후 입학정원이나 성적 제한 없이 예외학과를 제외한 15개 학과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가능학과

경영학과, 글로벌한국학과, 영어영문학과, 상담심리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 사회복지학과, 보건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동물자원과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 화학생명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건축학과(4년제/5년제)

\*예외학과: 종교, 예체능 및 입학정원 관리학과(보건, 사범, 첨단학과)



## 자기주도설계전공

개인의 적성과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기반으로 2개 이상의 학과를 융합하여 학생 맞춤형 전공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융합적인 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2학년부터 졸업까지 해당 학부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의 교육과정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과목 편성에서 제외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공릉 2동 26-21)

T. (02)3399-3377

F. (02)3399-3382

<http://ipsi.syu.ac.kr>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